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22. 10. 12 선고 2022가단10691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10. 12.

주 문

1. 피고와 B 사이에 주식회사 C 발행의 보통주 중,
가. 15,000주에 관하여 2021. 5. 18. 체결된,
나. 10,001주에 관하여 2021. 5. 24. 체결된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에게 제1항 기재 주식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 2항 및 피고는 주식회사 C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각 증여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3. 일부 기각하는 부분

원고는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주식회사 C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각 증여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할 것을 구하고 있으나, 주식의 양도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제되는 경우 주주권이 곧바로 양도인에게 회복되는 것이고 다만 주주권의 회복을 회사에 대항하기 위하여 명의개서를 필요로 할 뿐(상법 제337조 제1항), 더 나아가 그 취소 또는 해제 사실을 회사에 통지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박기범

[별지]

청 구 원 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사이의 관계

- 1) 원고는 B에 대하여 161,622,570원의 국세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이며, 피고는 B의 모친입니다(갑 제1호증 채납유무조화, 갑 제2호증 가족관계증명서).
- 2) B은 2019. 2. 12. 주식회사 C을 설립한, 주주지분 100%를 보유했던 출자자로서, 2021. 5. 18., 2021. 5. 24. 피고에게 주식회사 C의 보통주 주식 15,000주, 10,001주를 각 증여하였습니다(갑 제3호증 증여세 신고서).

나. 조세채권의 발생

- 1) 원고 산하 마포세무서장은 2018. 3. 2.부터 2019. 10. 1.까지 신고 후 무납부 등의 사유로, B에게 부가가치세 5건, 종합소득세 4건, 근로소득세 5건, 사업소득세 4건, 퇴직소득세 2건 등 총 20건을 각 고지하였고, B은 현재까지 위 20건의 세금에 대하여 가산금을 포함하여 총 161,622,570원을 체납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체납 내역은 아래 <표1>과 같습니다.

<표 1> 소재기일 현재 B 국세체납액

(단위 : 원)

순번	세 목	귀 속	납세의무 성립일	납부기한	고지세액	체납액
	합 계				123,683,240	161,622,570
1	부가가치세	201707	2017.12.31	2018.06.30	37,386,730	50,214,700
2	근로소득세	201804	2018.05.31	2018.08.31	169,260	174,330
3	부가가치세	201801	2018.06.30	2018.09.30	12,796,590	17,518,320
4	근로소득세	201805	2018.06.30	2018.09.30	197,020	202,930
5	종합소득세	201701	2017.12.31	2018.10.03	3,061,300	4,190,490
6	부가가치세	201807	2018.09.30	2018.10.25	17,557,000	23,903,540
7	퇴직소득세	201805	2018.06.30	2018.10.31	137,290	141,400
8	사업소득세	201806	2018.07.31	2018.10.31	921,770	10
9	사업소득세	201807	2018.08.31	2018.11.30	567,160	584,170
10	근로소득세	201807	2018.08.31	2018.11.30	67,990	70,020
11	종합소득세	201801	2018.06.30	2018.12.01	6,623,000	8,793,290
12	부가가치세	201807	2018.12.31	2019.03.31	17,366,800	22,837,300
13	사업소득세	201811	2018.12.31	2019.03.31	371,710	382,860
14	근로소득세	201811	2018.12.31	2019.03.31	257,380	265,100
15	퇴직소득세	201811	2018.12.31	2019.03.31	17,640	18,160
16	사업소득세	201812	2019.01.31	2019.07.02	235,510	242,570
17	근로소득세	201812	2019.01.31	2019.07.02	298,490	307,440
18	부가가치세	201901	2019.03.31	2019.07.05	2,416,760	3,123,460
19	종합소득세	201801	2018.12.31	2019.09.08	16,575,910	21,175,410
20	종합소득세	201801	2018.12.31	2019.11.16	6,657,930	7,477,070

다. 피보전채권으로서 조세채권의 성립

- 1)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된다”고 하고(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국세기본법 제2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는 각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며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합니다.
- 2) 또한, 대법원은 “국세징수법이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므로, 본세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역시 피보전채권에 포함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217764 판결 등 참조).
- 3) 사안으로 돌아와 살펴보면, B이 피고에게 주식회사 C의 주식을 증여할 당시 <표 1> 기재 각 조세채권은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하여 있었으므로, <표 1> 기재 각 조세채권의 가산금을 포함한 채납액 161,622,570원이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가. 일련의 행위로서 주식 증여

1) 대법원은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로서 사해성이 있는지 판단하게 되고, 이 때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처분의 상대방이 동일한지, 처분이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이 구체적으로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다7795판결 등 참조).

2) 전술한 바와 같이 B은 2021. 5. 18., 2021. 5. 24. 피고에게 주식회사 C의 보통주 주식을 증여하였는바, 첫 증여일로부터 일주일만에 모친인 피고에게 재차 주식을 증여한 점은 각 증여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할 것입니다.

나. 채무초과상태에서의 주식 증여

1)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 상태를 유발하거나 심화시킨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됩니다.

2) 이 사건 각 증여의 최종 시점인 2021. 5. 24.을 기준으로 B은 아래 <표2>와 같이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무자력 상태에서 주식회사 C의 주식 25,001주를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공동담보의 부족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증여는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표2> 사해행위(2021.5.24.) 당시 B의 재산현황

(단위 : 원)

	구분	세부내역	평가액	비고
적극재산	비상장주식	주식회사 C 50,000주	50,000,000	50,000주X1,000원
	예금잔액	서울우유농협(계좌번호 1 생략)	192,219	갑 제4호증 금융거래내역 조회
		신한은행(계좌번호 2 생략)	1,504,113	
		우리은행(계좌번호 3 생략)	149,840	
		우리은행(계좌번호 4 생략)	1,003,307	
		우리은행(계좌번호 5 생략)	4,447	
		우리은행(계좌번호 6 생략)	636	
		우리은행(계좌번호 7 생략)	332,923	
		우리은행(계좌번호 8 생략)	900	
		우리은행(계좌번호 9 생략)	33	
		농협은행(계좌번호 10 생략)	1,489,096	
		성암새마을금고(계좌번호 11 생략)	4,369,704	
		하나은행(계좌번호 12 생략)	29,296	
		하나은행(계좌번호 13 생략)	1,117	
		하나은행(계좌번호 14 생략)	207,655	
		카카오뱅크(계좌번호 15 생략)	616,737	
		카카오뱅크(계좌번호 16 생략)	6	
		케이뱅크(계좌번호 17 생략)	1,850,000	

	소계		61,752,029	
소극재산	국세채납	부가가치세 등	150,191,800	갑 제5호증 사해행위일 당시 채납액
	소계		150,191,800	
합 계			-88,439,771	

다. B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

- 1) 사해의사란 채무자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그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것으로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담보 부족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며, 이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족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참조).
- 2) 원고는 2019. 4. 22. B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C의 주식 20,000주를 압류하였습니다. 이후 B은 2020. 2. 13. 유상증자를 통해 주식회사 C의 주식 30,000주를 취득하였고 주식회사 C은 2021. 4. 27.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위 유상증자로 인한 주식의 변동상황을 제출하였으며 B은 2021. 5. 18., 2021. 5. 24. 피고에게 주식을 증여하였습니다.
- 3) 이와 같이 B은 고액의 국세 채납액을 부담하는 상황에서 본인의 주식에 대하여 압류 등 채납처분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음에도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 중 상당부분을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본인의 책임재산을 감

소시켰음이 명백하므로 이는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4) 어떤 법률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5) 사안의 경우에도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역시 추정되는 것이고,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할 수 있을 만한 특별한 사정은 수익자인 피고가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피고는 B의 모친인바, 조세채무가 있어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B으로부터 이 사건 증여를 통해 B의 책임재산이 감소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선의에 관한 사정은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3. 제척기간

원고는 채납액 징수를 위해 B의 재산상황을 조회하는 과정에서 2022. 3. 7. 이 사건 주식의 증여세 신고서 및 B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열람하여 이 사건 주식의 증여사실 및 B과 피고의 특수관계를 확인함으로써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임을 알게 되었으

므로, 제척기간인 사해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5년, 사해행위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을 초과하지 않았습니다.

4. 원상회복의 방법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원칙적으로 그 목적물 자체의 반환에 의하여야 하므로, 피고는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주식회사 C에게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증여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고, B에게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5. 결 론

이상의 사실들로 보아 국세채납자 B이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한 행위는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피고 또한 그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이 피고와 B 사이에 이 사건 주식의 증여행위를 사해행위로서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구하고자 본소 제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끝.

